

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[별표 5] <개정 2026. 6. 30.>

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
관세율표 번호		품명	규격 등	세율 (%)	한계수량
호	소호				
0408		새의 알(껍질이 붙지 않은 것)과 알의 노른자위(신선한 것, 건조한 것, 물에 삶았거나 찢은 것, 성형한 것,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,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)			
0408	1	알의 노른자위			
0408	11	*건조한 것	닭[갈루스 도메스티쿠스 ( <i>Gallus domesticus</i> )종으로 한정한다]의 것	0	
0408	19	*기타	닭[갈루스 도메스티쿠스 ( <i>Gallus domesticus</i> )종으로 한정한다]의 것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	0	8,000톤
0408	9	기타			
0408	91	*건조한 것	닭[갈루스 도메스티쿠스 ( <i>Gallus domesticus</i> )종으로 한정한다]의 것	0	

0408	99	기타				
		*1. 닭[갈루스 도메스티쿠스 ( <i>Gallus domesticus</i> )종으로 한정한다]의 것	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	0		
3502		알부민(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)·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				
3502	1	알의 흰자위(egg albumin)				
3502	11	*건조한 것	식품 원료용의 것	0		
3502	19	*기타	식품 원료용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	0		
0811		냉동 과일과 냉동 견과류(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진 것으로 한정하며,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)				
0811	90	*기타	과실로 한정한다.	5	10,000톤	
1512		해바라기씨유·잇꽃유·목화씨유와 그 분획물(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)				

1512	1	해바라기씨유 · 잇꽃유와 그 분획물			
1512	19	기타  1. 정제유(精製油)  *가. 해바라기씨유		0	10,000톤
1702		그 밖의 당류(糖類)[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(乳糖) · 맥아당 · 포도당 · 과당을 포함하며,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], 당시럽[향미제(香味劑)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], 인조꿀(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), 캐러멜당			
1702	60	*그 밖의 과당과 과당시럽(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. 다만, 전화당(轉化糖)은 제외한다.	과당시럽	0	3,000톤
1803		코코아 페이스트(paste)[탈지(脫脂)한 것인지에 상관없다]			
1803	10	*탈지(脫脂)하지 않은 것		0	수입 전량
1804	00	*코코아 버터(지방이나 기름)		0	수입 전량
1805	00	*코코아 가루(설탕이나 그 밖		0	수입 전량

		<p>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)</p>		
1901		<p>맥아 추출물(extract)과 고운 가루·부순 알곡·거친 가루·전분이나 맥아 추출물(extract)의 조제 식료품[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(脫脂)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], 제 0401 호부터 제 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[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(脫脂)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]</p>		
1901	90	<p>기타</p> <p>*1. 맥아 추출물(extract)</p>	0	600톤
2008		<p>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·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</p>		

2008	20	*파인애플		15	8,000톤
2008	9	기타(혼합물을 포함하되, 소호 제2008.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)			
2008	97	혼합물			
		1. 과일 각테일			
		*가.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 에 넣은 것		20	5,500톤
		*나. 기타		15	
		*2. 기타	과일 샐러드 및 그 밖의 과일 혼합물의 것으로 한정한다.	15	
2008	99	기타			
		*6. 기타		15	7,500톤
2009		과일·견과류 주스(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)·채 소 주스[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)]			
2009	2	그레이프프루트(grapefruit) 주 스, 포멜로(pomelo) 주스			
2009	29	*기타		0	1,000톤

2009	3	그 밖의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			
2009	31	*브릭스(Brix) 값이 20 이하인 것	레몬주스	20	7,500톤
2009	39	*기타	레몬주스	20	
2009	4	파인애플주스			
2009	49	*기타		20	700톤
2009	7	사과주스			
2009	79	*기타		15	3,000톤
2009	89	기타			
		*1. 크랜베리(cranberry)[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(Vaccinium macrocarpon)·바치니움 옥시코코스(Vaccinium oxycoccos)]와 링곤베리(lingonberry)[바치니움 비티스-이다에아(Vaccinium vitis-idaea)] 이외의 과실·견과류 주스	딸기주스, 코코넛 주스(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)와 기타 견과류 주스는 제외한다.	20	11,000톤
2306		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[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(pellet)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304 호나 제 2305 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·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			

		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]		
2306	60	팜 너트(palm nut)나 핵(核)에서 나온 것	0	20,000톤
2709	00	석유와 역청유(瀝靑油)(원유로 한정한다)		
		1. 석유		
		가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.796 초과 0.841 이하인 것		
		나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.841 초과 0.847 이하인 것	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	0 16,500,000 배럴
		다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.847 초과 0.855 이하인 것		
		라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.855 초과 0.869 이하인 것		
		마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.869 초과 0.885 이하인 것		
		바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.885 초과 0.899 이하인 것		
		사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		

		0.899 초과 0.904 이하인 것		
		아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.904 초과 0.966 이하인 것		
		자. 기타		
		2. 역청유(瀝靑油)		
2711		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 의 탄화수소		
2711	1	액화한 것		
2711	12	프로판	0	수입 전량
2711	13	부탄	0	
2711		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 의 탄화수소		
2711	1	액화한 것		
2711	11	천연가스	0	수입 전량
2711	2	가스 상태인 것		
2711	21	천연가스	0	

비고: 품명란에 “\*” 표시된 품목은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관리품목을 말한다.